

2024년

세법개정안

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



1. 경제의 역동성 지원

- 1 투자·고용·지역발전 촉진
- 2 기업경쟁력 제고
- 3 자본시장 활성화

2. 민생경제 회복

- 1 결혼·출산·양육 지원
- 2 서민·중산층 부담 경감
- 3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3. 조세체계 합리화

-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
- 2 비과세·감면 정비
- 3 세원투명성 제고

4.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- 1 납세자 편의 제고
- 2 납세자 권익 보호

1. 경제의 역동성 지원

1 투자·고용·지역발전을 촉진합니다.

1 국가전략기술 등 R&D세액공제·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	내용	기한
R&D비용 세액공제	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	3년 연장 (~'27.12.31.)
통합투자 세액공제	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	

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

	현행	개정안												
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	3년	5년 (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)												
중견기업 규모 기준 (3년 평균 매출액)	3,000억원 미만 (R&D세액공제 적용시 5,000억원 미만)	중소기업 졸업 기준금액의 3배 미만 (R&D세액공제 적용시 5배 미만)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준금액(억원)</th> <th>업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500</td> <td>이류제조, 1차금속제조 등</td> </tr> <tr> <td>1,000</td> <td>식품제조, 건설, 도소매 등</td> </tr> <tr> <td>800</td> <td>운수창고, 정보통신 등</td> </tr> <tr> <td>600</td> <td>보건사회복지, 기타개인서비스 등</td> </tr> <tr> <td>400</td> <td>숙박음식, 교육서비스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준금액(억원)	업종	1,500	이류제조, 1차금속제조 등	1,000	식품제조, 건설, 도소매 등	800	운수창고, 정보통신 등	600	보건사회복지, 기타개인서비스 등	400	숙박음식, 교육서비스 등
기준금액(억원)	업종													
1,500	이류제조, 1차금속제조 등													
1,000	식품제조, 건설, 도소매 등													
800	운수창고, 정보통신 등													
600	보건사회복지, 기타개인서비스 등													
400	숙박음식, 교육서비스 등													

3 R&D,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, 투자증가분 공제를 확대

	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R&D 세액공제 공제율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(%)</th> <th>기본</th> <th>중간</th> <th>중소</th> <th>추가</th> </tr> <tr> <td></td> <td>대</td> <td>중</td> <td>중</td> <td>중</td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</td> <td>0-2</td> <td>8-15</td> <td>25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신성장·원천기술</td> <td>20</td> <td>30</td> <td>최대1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국가전략기술</td> <td>30</td> <td>40</td> <td>최대1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(%)	기본	중간	중소	추가		대	중	중	중	일반	0-2	8-15	25	-	신성장·원천기술	20	30	최대10		국가전략기술	30	40	최대10		<p>❖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점감구조 도입(일반은 공제율 상향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(%)</th> <th>기본</th> <th>중간</th> <th>중소</th> <th>추가</th> </tr> <tr> <td></td> <td>대</td> <td>중</td> <td>중</td> <td>중</td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</td> <td>0-2</td> <td>8-20</td> <td>25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신성장·원천기술</td> <td>20</td> <td>20,25</td> <td>30</td> <td>최대10</td> </tr> <tr> <td>국가전략기술</td> <td>30</td> <td>30,35</td> <td>40</td> <td>최대1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(%)	기본	중간	중소	추가		대	중	중	중	일반	0-2	8-20	25	-	신성장·원천기술	20	20,25	30	최대10	국가전략기술	30	30,35	40	최대10
구분(%)	기본	중간	중소	추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	중	중	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	0-2	8-15	25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성장·원천기술	20	30	최대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전략기술	30	40	최대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(%)	기본	중간	중소	추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	중	중	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	0-2	8-20	25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성장·원천기술	20	20,25	30	최대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전략기술	30	30,35	40	최대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통합투자 세액공제 공제율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(%)</th> <th>기본</th> <th>중간</th> <th>중소</th> <th>추가</th> </tr> <tr> <td></td> <td>대</td> <td>중</td> <td>중</td> <td>중</td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</td> <td>1</td> <td>5</td> <td>10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신성장·원천기술</td> <td>3</td> <td>6</td> <td>1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국가전략기술</td> <td>15</td> <td>25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(%)	기본	중간	중소	추가		대	중	중	중	일반	1	5	10	3	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	국가전략기술	15	25	4		<p>❖ 점감구조 도입, 투자증가분 공제를 확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(%)</th> <th>기본</th> <th>중간</th> <th>중소</th> <th>추가</th> </tr> <tr> <td></td> <td>대</td> <td>중</td> <td>중</td> <td>중</td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</td> <td>1</td> <td>5,75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신성장·원천기술</td> <td>3</td> <td>6,9</td> <td>1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국가전략기술</td> <td>15</td> <td>15,20</td> <td>25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(%)	기본	중간	중소	추가		대	중	중	중	일반	1	5,75	10	10	신성장·원천기술	3	6,9	12		국가전략기술	15	15,20	25	
구분(%)	기본	중간	중소	추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	중	중	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	1	5	10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전략기술	15	25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(%)	기본	중간	중소	추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	중	중	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	1	5,75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성장·원천기술	3	6,9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전략기술	15	15,20	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

	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적용 대상	상시근로자 (임시·일용직,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)	계속고용+탄력고용 (임시직,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 공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4">공제액(단위:만원)</th> </tr> <tr> <td></td> <th>중소(3년)</th> <th>중간</th> <th>대</th> <th>대</th> </tr> <tr> <td></td> <th>수도권</th> <th>지방</th> <th>(3년)</th> <th>(2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 여성 등</td> <td>1,450</td> <td>1,550</td> <td>800</td> <td>400</td> </tr> <tr> <td>그외 상시근로자</td> <td>850</td> <td>950</td> <td>450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			중소(3년)	중간	대	대		수도권	지방	(3년)	(2년)	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 여성 등	1,450	1,550	800	400	그외 상시근로자	850	950	450	-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4">공제규모(단위:만원, %)</th> </tr> <tr> <td></td> <th>중소</th> <th>중간</th> <th>대</th> <th>대</th> </tr> <tr> <td></td> <th>수도권</th> <th>지방</th> <th>중간</th> <th>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자 등</td> <td>2,200</td> <td>2,400</td> <td>1,200</td> <td>400</td> </tr> <tr> <td>그외 계속고용</td> <td>1,300</td> <td>1,500</td> <td>700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제규모(단위:만원, %)					중소	중간	대	대		수도권	지방	중간	대	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자 등	2,200	2,400	1,200	400	그외 계속고용	1,300	1,500	700	-
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(3년)	중간	대	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도권	지방	(3년)	(2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 여성 등	1,450	1,550	800	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그외 상시근로자	850	950	45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규모(단위:만원, 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	중간	대	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도권	지방	중간	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자 등	2,200	2,400	1,200	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그외 계속고용	1,300	1,500	70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가 공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2">공제액(단위:만원)</th> </tr> <tr> <td></td> <th>중소</th> <th>중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규직 전환자(1년 지원)</td> <td>1,300</td> <td>900</td> </tr> <tr> <td>육아휴직 복귀자(1년 지원)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	중소	중간	정규직 전환자(1년 지원)	1,300	900	육아휴직 복귀자(1년 지원)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탄력고용</th> <th>중소</th> <th>중간</th> <th>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임금증가율 3%~20%</td> <td>증가분의 20%</td> <td>10%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임금증가율 20% 초과</td> <td>20% 초과 증가분의 40%</td> <td>20%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탄력고용	중소	중간	대	임금증가율 3%~20%	증가분의 20%	10%	-	임금증가율 20% 초과	20% 초과 증가분의 40%	20%	-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	중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규직 전환자(1년 지원)	1,300	9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아휴직 복귀자(1년 지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탄력고용	중소	중간	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금증가율 3%~20%	증가분의 20%	10%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금증가율 20% 초과	20% 초과 증가분의 40%	20%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후 관리	최초 공제연도 대비 2~3년차 고용감소시 추징	사후관리 폐지,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고용 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5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

1)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 취득사:

	소재지	인구감소지역 (수도권·광역시 제외,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)
신규취득 주택요건	가액상한	공시가격 4억원
	취득기한	'24.1.4.~'26.12.31.
효과		1주택자로 간주,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
2)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사:

신규취득 주택요건	소재지	수도권 밖의 지역
	규모	전용면적 85m ² , 취득가액 6억원 이하
	취득기한	'24.1.10.~'25.12.31.
효과		1주택자로 간주,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
2 기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.

1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

	현행	개정안
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	최대주주 주식*은 평가한 가액에 20% 가산 *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[중소·중견기업(매출액 5천억원 미만) 주식 등 제외]	제도 폐지

2 가업상속·승계 제도 개선

1 밸류업·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·이전기업에 해당사:

	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	① 중소기업 ②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	모든 중소기업																
공제한도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업영위기간</th> <th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~20년</td> <td>300억원</td> </tr> <tr> <td>20~30년</td> <td>400억원</td> </tr> <tr> <td>30년 이상</td> <td>600억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업영위기간	공제한도	10~20년	300억원	20~30년	400억원	30년 이상	600억원	<p>① 밸류업·스케일업 우수기업: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업영위기간</th> <th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~20년</td> <td>600억원</td> </tr> <tr> <td>20~30년</td> <td>800억원</td> </tr> <tr> <td>30년 이상</td> <td>1,200억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기회발전특구 창업·이전기업: 한도 없음</p>	기업영위기간	공제한도	10~20년	600억원	20~30년	800억원	30년 이상	1,200억원
기업영위기간	공제한도																	
10~20년	300억원																	
20~30년	400억원																	
30년 이상	600억원																	
기업영위기간	공제한도																	
10~20년	600억원																	
20~30년	800억원																	
30년 이상	1,200억원																	

2)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

	현행	개정안
사업무관 자산의 범위	비사업용 토지,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,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, 대여금 등	임직원 임대주택, 주택자금 대여금 등 제외

3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.

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

법인세 세액공제	대상	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
	공제대상금액	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% 초과 증가분
	공제율	5%(공제한도: 총 주주환원금액의 1%)
	적용기간	'25.11.~'27.12.31.(3년간) 사업연도의 주주환원
배당소득 분리과세	대상	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
	대상소득금액	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
	분리과세 세율	분리과세자 9%, 종합과세자 25%
	적용기간	'26.1.1.~'28.12.31. 지급받는 배당금

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

	현행	개정안
금융투자소득세	'25.11. 시행 예정	폐지 *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

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세제지원 확대

	현행	개정안	
	일반	일반투자형	국내투자형 (신설)
납입한도	연 2천만원 (총 1억원)	연 4천만원 (총 2억원)	연 4천만원 (총 2억원)
비과세한도*	200만원 (서민·농어민형 400만원)	500만원 (서민·농어민형 1,000만원)	1,000만원 (서민·농어민형 2,000만원)
금융소득 종합과세자	가입제한	가입제한	가입허용 (비과세 없이 14% 분리과세)

* (한도초과분) 9% 분리과세

2. 민생경제 회복



1. 결혼·출산·양육을 지원합니다.

1. 결혼세액공제 신설

적용대상	혼인신고를 하는 자(24.11.이후)
적용연도	혼인신고를 한 해(생애 1회)
공제금액	최대 100만원(부부 1인당 50만원)
적용기한	3년(24~26년 혼인신고분)

2.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

	현행	개정안
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	월 20만원	전액비과세 *근로자(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)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한 경우

3.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
	현행	개정안
공제대상	8~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	동일
공제금액	첫째	15만원
	둘째	20만원
	셋째 이후	30만원/인

4.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

	세제지원 내용	적용대상	
		현행	개정안
주택청약 종합저축	납입액(연 300만원 한도) 40% 소득공제	세대주	세대주 및 배우자
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	이자소득 비과세(500만원 한도)	세대주	세대주 및 배우자

2. 서민·중산층 부담을 경감합니다.

1.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

	현행	개정안
공제율	신용카드	15%
	현금영수증·직불카드 등	30%
	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* (*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)	30%
	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	40%
		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

2. 근로장려금(EITC)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

	현행	개정안	
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	가구유형	총소득기준	총 소득기준
	단독	2,200만원	동일
	홀벌이	3,200만원	동일
	맞벌이	3,800만원	4,400만원

3. 소상공인·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.

1.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

	현행	개정안	
공제부금 납입한도	분기별 300만원	동일	
공제적용 소득	① (개인사업자) 사업소득 ② (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) 근로소득	① 동등 ② (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) 근로소득	
소득공제 한도	사업(근로)소득금액	공제한도	사업(근로)소득금액
	4천만원 이하	500만원	4천만원 이하
	4천만원~1억원	300만원	4천만원~1억원
	1억원 초과	200만원	1억원 초과

2.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	내용	적용기한
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	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% (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%) 세액공제	1년 연장 (~25.12.31.)

3. 조세체계 합리화



1.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조세제도를 효율화 합니다.

1. 상속·증여세 부담 적정화

1) 상속·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

과세표준 및 세율	현행		개정안	
	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	1억원 이하	10%	2억원 이하	10%
	5억원 이하	20%	5억원 이하	20%
	10억원 이하	30%	10억원 이하	30%
	30억원 이하	40%	10억원 초과	40%
	30억원 초과	50%		

2)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

	현행	개정안
자녀공제 금액	인당 5천만원	인당 5억원

2. 가상자산 과세 유예

	현행	개정안
가상자산 과세	'25.11. 시행 예정	'27.11. 시행 예정

3. 공시대상기업집단*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

*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

	현행	개정안
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	①, ② 중 선택 ①: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②: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	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(중소기업규모 법인은 제외)은 ②기준

4.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*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·세율 조정

*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% 초과,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% 이상, ③ 상사근로자 5인 미만인 법인

현행		개정안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9%	200억원 이하	19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	21%
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	21%		
3,000억원 초과	24%	3,000억원 초과	24%

2. 비과세·감면 제도를 정비합니다.

1.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

	현행	개정안
적용대상	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(매출 10억원 이하)	동일
공제대상	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발급 등	동일
공제율	1.3%('27년 이후 1.0%)	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.65%('27년 이후 0.5%)
공제한도	연간 1천만원 ('27년 이후 연간 5백만원)	동일

2.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

	현행	개정안
공제액	종합소득세·법인세·양도소득세 2만원/건 부가가치세 1만원/건	양도소득세 2만원/건
공제한도	세무대리인	300만원
	세무법인	750만원

3. 세원투명성을 제고합니다.

1.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

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*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
*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

2.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

	현행	개정안
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	토지·건물, 부동산 취득 권리, 시설물 이용권(회원권 등)	주식 등 추가 (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)

4.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

1. 납세자 편의를 제고합니다.

1.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

	현행	개정안
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	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(선택)	기부금 수입이 일정규모(예: 3억원)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

2.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

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

- ① (대상) 사전 등록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
- ② (절차) 등록업체는 물품 수입 전까지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
- ③ (효과)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검사방법 등 적용

2. 납세자 권익을 보호합니다.

1.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

	현행	개정안
경정청구 대상	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	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

